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8. 30. 임종득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 9. 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2024.11.20)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4.12.26)

상정 · 축조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6.2.24)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6.2.2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종득의원)

현행법은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

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함)를 사용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드론 테러 위협 증가로 비물리적 타격수단인 전파차단 장치의 전력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군사활동 자체뿐만 아니라 군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도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하여야 할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군사활동 및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안전을 위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최근 드론 테러 위협의 증가로 비물리적 타격수단인 전파차단장치의 전력화가 확대되고 있고, 군사활동 자체뿐만 아니라 군사활동을 수행

하기 위한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도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하여야 할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다만, 개정안 제2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군사활동 및 대테러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활동을 추가하더라도 세 번째 조건인 “공공안전 위협 수단 대상”은 충족하지 못해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달성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